# Text 조사우수사례 평가 보고서

Text **('25上 평가번호 : 26 )** 

Special

개인·법인	업종(코드)	조사유형	외형구간	조사청
법인	건설/일반토목공사(451200)	정기	600억원대	지방청

# Tex I 조사성과(결과)

# Text 가. 조사대상 개요

Text ○ 조사법인은 '8X년 6월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Text 조사법인의 주요 시공 브랜드는 ■■■■임

Text - 주로 ★★지역에서 아파트·상가를 성공적으로 분양하였으며, ▲▲ 및
Text △△지역 일대에서 관급공사 등을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음

#### Text 나. 적출성과

# Text ○ 주요 적출 내역

Special

I	연번	조사항목	코드	적출요지(결정경정 사유)
	1)	가공급여	10501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주의 배우자 <b>사치·향락</b> 생활 목적 법인자금 유출
	2	타법인 비용을 대신 부담	11204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자녀회사 <b>부당지원</b>
	3	업무무관비용	11209	변칙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 상품권 <b>사적</b> 유용

# Tex Ⅲ 조사노하우

Special

적출1

❖ 가공급여 (항목코드: 10501)

사주의 배우자 사치·향락 생활 목적 법인자금 유출

##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u>신고자료 확인</u>) 조사법인은 '15.5월부터 사주의 배우자 AAA에게 고액의
Text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

Text - AAA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상 임원 및 출자자가 아님에도

Text 불구하고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Text 시주의 배우자 AAA는 지역 사회에서 명품 구입 등 사치·향락 생활을 하고

Text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분석한바 평일 낮 시간대에

Text 전국 명품매장 등 **호화·사치성** 승인내역이 다수 확인되어 **가공급여를** 

Text 계상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중점 조사항목으로 선정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able

#### 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인건비
- 2. 복리후생비
-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Table

####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Table

#### 심판례 조심-2019-구-0048(2019.10.16.)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무사실 입증 결재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대표이사 지시로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며 별도 근무공간이 없는 등 통상적인 근로용역 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증빙으로 제출한 특허는 법인의 사업과 상이하며 관련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 Text 조사법인의 인사 관련 자료 검토한바 사주의 배우자 AAA은 조경기능사 Text 보유자로 조사법인의 조경팀 소속으로 확인되며,
  - Text 조사법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및 업무분장표 등 확인한바 Text 공사현장에서 실제 조경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1차 판단
- Text (현장확인 실시) 조사법인 본사 2층에 조경팀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Text 확인되어 조사팀은 조사법인 직원 및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조경팀 불시 Text 현장확인 실시
  - Text 조경팀 사무실 방문 시 AAA의 업무공간 및 전산장비 등이 없는 것으로
    Text 확인되어 조경팀 소속 직원 인터뷰 실시한바 소속 직원 전원이 AAA은
    Text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여 가공급여 확정함

# Text 나. 현장확인을 통한 성공적 처분유지

- Text (약인서 작성) 조사팀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주의 배우자 AAA이 실제 Text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Text 관련 법령을 조사법인에 충분히 설명함
  - Text 조사법인은 사주의 배우자 AAA의 사치·향락 생활 목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Text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법령 및 질의 회신문에 따라 과세 타당성을

    Text 수긍하고 확인서를 작성함
- Text (납기내 현금납부) 조사 종결 후 조기결정 신청하여 불복 없이 고지세액
  Text 전액을 납기내 현금 납부함

Special

적출 2

# ❖ 타법인 비용을 대신 부담 (항목코드: 11204)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자녀회사 부당지원

#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특수관계법인 내역 확인)** 사주의 子 BBB가 100% 출자하여 '19년 6월에

Text 조사법인과 동일 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를 설립한

Text 사실을 확인

Text - 해당 법인은 설립시부터 조사법인 소유 건물에 임차하여 사무실을

Text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Text 주식회사 ●●의 재무제표 등 <u>확인한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아파트**</u>

Text 분양 실패로 수년간 결손금이 발생하여 조사법인이 관계사 주식회사

Text ●●에 자금을 부당지원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공동경비

Text 등을 조사항목으로 선정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able

####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able

#### 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Text **2. 조사기법**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자료제출 요구) 조사 착수일 현재 조사법인은 품의서 및 문서수발 업무를

Text 전산이 아닌 수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대상연도의

Text 품의서 건철 등 자료제출 요구

Text - 품의서 등 문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서가 조사법인

Text 총무팀 소속 직원 CCC 및 DDD가 관계사 주식회사 ●●의 문서를 접수한

Text 사실을 확인

- Text (이 (인터뷰 실시) 조사법인의 직원이 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 Text 여부에 대하여 해당 문서를 제시하며 재무팀장과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 Text 인터뷰 결과 CCC 및 DDD는 조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실제

    Text 관계사 주식회사 ●●의 문서수발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관계사의

    Text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사법인이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였다는 진술 확보

# Text 나. 증거자료 확보 및 처분유지

- Text (증거자료 확보) 조사팀은 조사법인 총무팀 소속 직원 CCC 및 DDD가

  Text 관계사 주식회사 ●●의 문서수발 업무 등을 수행한 문서를 증거자료로

  Text 확보
- Text (확인서 작성) 조사팀은 증거자료 확보 및 인터뷰를 통해 조사법인 총무팀

  Text 소속 직원 CCC 및 DDD가 관계사 주식회사 ●●의 문서수발 업무 등을

  Text 전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설명하고 관련 법령을 충분히 설명함
  - 조사법인은 관계사의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사법인의 업무가 아닌

    Text 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Text 법령에 따라 과세 타당성을 수긍하고 확인서를 작성함
- Text O (납기내 현금납부) 조사법인은 관계사의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타법인

  Text 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조사 종결 후 조기결정 신청하여 불복

  Text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현금 납부함

Special

적출③

# ❖ 업무무관비용 (항목코드: 11209) 변칙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 상품권 사적 유용

# Text **1. 조사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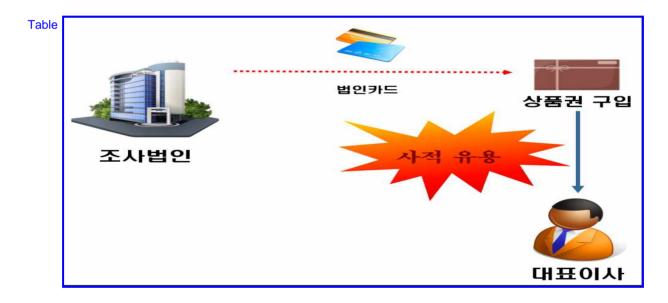
#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정보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법인의 Text 법인시용카드 사용내역 분석한바 고액의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 확인

Text - 조사법인의 손익계산서 검토한바 구입한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변칙

Text 계상하고 사적으로 유용하였을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어 조사

Text 항목으로 선정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able

## 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Table** 

####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Text **2. 조사기법**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O (전표 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법인이 구입한 상품권은 전액 Text 복리후생비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상품권 교부대장 및 관련 Text 품의서 제출 요구

Text - 조사법인은 상품권 교부 사유, 교부 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Text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

Text ○ (인터뷰 실시) 구입한 상품권의 사용처에 대하여 재무팀장과 인터뷰를

Text 실시하였으며 해당 상품권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Text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확보

# Text 나. 관련 법령 등을 통한 논리적 설득으로 처분유지

Text ○ (확인서 작성) 조사팀은 조사법인이 구입한 상품권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Text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므로,

Text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Text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상여 처분한다는 법령을
Text 제시하여 조사법인은 이를 수긍하고 확인서를 작성함

Text ( '납기내 현금납부) 조사법인은 상품권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Text 인정하였으며, 조사 종결 후 조기결정 신청하여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Text 납기내 현금 납부함